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978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	---

1. 전북특별자치도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등	3
--	---

I. 개요

1.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97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성윤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15.

(3) 회 부 일 : 2025. 9.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함)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전북특별법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세제 특례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전북특별자치도로의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

121조의36부터 제121조의38까지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전북특별자치도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등 (신영대의원안, 이성윤의원안)

현 행	신영대의원안	이성윤의원안
<신 설>	<u>제5장의12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조세특례</u> ☐ <u>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제121조의36)</u> ○ 감면대상: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정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 감면율: 사업개시 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 * 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u>제5장의12 전북특별자치도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u> ☐ <u>전북투자진흥지구 또는 전북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37 및 제121조의38)</u> ○ 감면대상: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 또는 전북자유무역지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정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 ○ 감면율: 사업개시 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 * 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현 행	신영대의원안	이성윤의원안
<신 설>	감면대상사업장은 2,000만원 ○ 감면세액 추정요건: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2년 이내에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감면대상사업장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통합투자세액공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등 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제도 등과 중복적용 배제 ○ 추계과세 시 미적용 ○ 최저한세 적용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	감면대상사업장은 2,000만원 ○ 감면세액 추정요건: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2년 이내에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 전북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이 해지된 경우 ○ 통합투자세액공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등 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제도 등과 중복적용 배제 ○ 추계과세 시 미적용 ○ 최저한세 적용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전북투자진흥지구 또는 전북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 □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36) ○ 감면대상: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지식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

현 행	신영대의원안	이성윤의원안
		서 발생하는 소득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 감면율: 사업개시 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 * 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은 2,000만원 ○ 감면세액 추정요건: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2년 이내에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감면대상사업장을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통합투자세액공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등 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제도 등과 중복적용 배제 ○ 추계과세 시 미적용 ○ 최저한세 적용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현 행	신영대의원안	이성윤의원안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

* 신영대의원안 2025. 4. 18. 발의(의안번호 9952), 이성윤의원안 2025. 9. 15. 발의(의안번호 12978)

□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신영대의원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¹⁾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이성윤의원안은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외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²⁾에 따른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 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³⁾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함)는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의 전라북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설치되었고, 이후 전북자치도에 실질적인 특례와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져 2024. 12. 27.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그 시·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요청된 지역의 실정과 지정의 필요성 및 제5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경계·면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 시행 중임.

「전북특별법」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나,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임.

또한, 「전북특별법」 제77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투자진흥지구와 마찬가지로 2025년 9월 현재 지정 사례는 없음.

한편,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김제자유무역지역(0.991km², 35개사 입주)과 군산자유무역지역(1.256km², 31개사 입주) 등 총 2개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임.

- 각 개정안은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자치도 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창출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전북자치도 내 기업 입주를 유도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전북자치도는 2025년 기준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⁴⁾으로 지정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는 23.6%에 불과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 소재 상장법인 수는 36개로 전체 2,759개 상장법인 중 1.3%에 불과함.⁵⁾

[2025년 5월 기준 광역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행정구역	재정자립도	행정구역	재정자립도
전국	43.2	경기도	55.7
서울특별시	73.6	강원특별자치도	25.7
부산광역시	42.7	충청북도	31.8
대구광역시	41.9	충청남도	32.2
인천광역시	49.2	전북특별자치도	23.6
광주광역시	39.8	전라남도	23.7
대전광역시	41.1	경상북도	24.3
울산광역시	46.1	경상남도	34.3
세종특별자치시	54.3	제주특별자치도	33.1

주: 재정자립도=(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

자료: 행정안전부

둘째,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 다른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조세특례제도가 운영 중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2025년

4)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의미함(「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1호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5) KIND 기업공시채널(2025. 6. 20. 기준)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 3년
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제주투자진흥지
구 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광주)에 2025년 12월 31
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
해서도 동일한 감면특례가 적용되고 있음.⁶⁾

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
하 이 조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
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
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
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
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
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
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
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분
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
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
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또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통해 창출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함.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전북자치도 내 다양한 지역이 이미 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현행 제도 하에서도 전북자치도에서 창업하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폭넓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023년 6월 새만금개발청장은 245만평에 달하는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제1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설정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르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내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한편 2024년 6월 김제시(자동차부품, 특장차), 전주시(탄소섬유), 익산시·정읍시(동물용의약품·건강기능식품)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는데, 현행법 제121조의33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⁷⁾

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

또한, 현행법 제121조의22에 따르면 익산시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⁸⁾

이 외에도 전북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 기업과 지역활성화지역(임실군·장수군·진안군)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역시 폭넓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⁹⁾

둘째, 특정 지역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은 다른 지역과의 차등과세를 허용하는 것으로, 세제 지원을 요구하는 모든 특구에 대하여 특례를 허용할 경우 세입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및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셋째, 「전북특별법」 제73조에 따르면¹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비록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진흥지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넷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조세특례와 관련하여, 2002년 제주자유무역지역에 한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하였으나 2021년 말 일몰기한 도래 이후 연장하지 않은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1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